

2015년도

정기 재물조사 계획

2015. 10.

서울연구원

2015년도 정기재물조사 계획

우리 연구원에서 취득·보관 운영중인 장비 및 물품의 수량·상태·위치 등을 파악, 적절한 자산관리를 통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I

개 요

근거

- 회계규정 제72조(현물조사) 및 물품관리규칙 제10조(물품대조)

기본방향

- 현장조사를 통한 보유물품 파악의 정확도 제고
- 물품의 대여·이동 등 사용 중 조사를 통해 업무지원 공백의 최소화
- 재물조사 결과의 신속한 처리로 물품의 경제성 제고

조사기간 : 2015. 10. 19(월) ~ 11. 26(목)

조사대상

- 연구원 물품 : 5,574대

품 목	수 량	품 목	수 량
가구품류	3,920	공청방송류	27
사무기기류	84	자동제어류	16
가전제품류	72	통신장비류	30
전산품류	1089	소방장비류	4
방송장비류	230	기타품류	102

※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, 취득가격이 10만원 이상의 물품

세부일정

- 2015.10. 19(월) ~ 10. 21(수) 재물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준비
- 2015.10. 22(목) ~ 11. 18(수) 현장조사
- 2015.11. 19(목) ~ 11. 25(수) 조사자료 정리
- 2015.11. 26(목) 재물조사결과 보고

 사전준비

- 보유물품 정리
- 물품관리 프로그램 마감 : 기준일로 마감 정리
- 재물조사를 위한 조사서식 및 대상목록 준비

 조사실시

 ○ 조사항목

- 수량 및 위치 : 물품재고와 실제 수량, 위치 파악
- 물품상태 : 수선 필요여부, 불용대상 여부 파악
- 물품 활용도 : 불요·불급용품 및 물품사용에 대한 활용도 조사

 ○ 조사방법

- 조사기간 중 사용 중인 물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물품 확인 (개창식 조사)
- 개별연구실, 사무실 등 방문하여 조사항목에 의한 현장조사 실시
- 실·본부·센터 직원 입회하에 실시

□ 조사결과

○ 물품관리프로그램 정리

- 업무상 착오로 인한 초과 또는 부족의 경우 프로그램 수정 입력

○ 수 선

- 고장 등으로 수선이 필요한 물품은 조사기간 중 정비 실시

○ 변 상

-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
- 손·망실에 대한 변상은 현금 원칙
- 변상금액 :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 기준 (사실 발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시가)

○ 불용결정 및 처분

- 불용결정 기준

- ①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예정이 없는 물품
- ② 원 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
- ③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불가 물품
- ④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
- ⑤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
- ⑥ 기타 위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

- 처 분 : 불용품 중 활용 불가능품은 매각, 양여, 해체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

III

행정사항

교육실시

-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반 및 각 실·본부·센터 연구조원 사전교육 실시

실·본부·센터 협조

- 현장 조사시 해당 실·본부·센터 직원들은 실사에 입회하여 소관 물품의 활용 및 불용대상 등 상태 판정에 협조

조치사항

- 불용물품의 일제정리 추진
- 재고로 보유한 물품에 대해 필요부서에 배부하여 물품 활용도 제고